

2017년 「서대문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공모

서대문구에서는 민간 영역의 공유활동 촉진을 통한 ‘공유(共有)도시 서대문’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모 개요

- 신청기간 : '17. 1. 23.(월) ~ 2. 13.(월) [22일간]
- 신청분야 : 서대문구 공유촉진을 위한 자유제안 사업
 - 서대문구의 특색을 살린 사업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 학교내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학교내 공유교육, 공유체험 워크숍 등)
 - 주민수요가 많고 공유 활동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
- 신청자격 : 서대문 관내에서 ¹⁾공유를 통해 ²⁾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³⁾단체 및 기업
 - [1순위] 주소(지점포함) 및 사업의 주 활동영역(대상)이 서대문구인 단체·기업
 - [2순위]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1) 「공유」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2) ‘공유’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파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3) 단체 및 기업 설립요건이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및 우편 접수

○ 이메일 : blue09@sdm.go.kr

○ 방문 및 우편 : (0371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3층 정책기획담당관

※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24: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후 유선(☎ 02-330-1330)으로 접수 확인 요망

심사위원회 개최 : '17. 2월 중

심사결과 발표 : '17. 3월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 3. ~ 2017. 11월 ※ 협약체결일 이후

지원규모 : 총 1,000만원

○ 단체·기업별 1개 사업, 사업별 최대 500만원 ※ 지원금의 10%이상 자부담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내용 :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소모성물품구입비, 행사비, 홍보비 등)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사업비 지급 : 지정 공유단체·기업과 서대문구가 협약체결 후 규정에 의거 지급

3. 제출 서류 【붙임. 사업비지원 신청서(서식)】 참조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계획서 1부 【서식1-1】
- 공유 촉진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 【서식1-2】
- 신청 단체·기업 소개서 및 관련 확인서류 각 1부

① 단체 소개서 【서식2-1】

▶ **설립요건 확인서류** (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심사 관련 자료** (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② 기업 소개서 【서식2-2】

▶ **설립요건 확인서류** (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심사 관련 자료** (각 항목 모두 제출)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가능)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1부

- 기타 증빙서류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 필수)
- PT용 사업계획서 (5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분량, PPT 12장 이내)

4. 심사 및 지원결정

- 1차 심사 :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
 - 심사일 : 2016. 2월 중 ※ 추후 개별 안내
 - 심사방법 : 서류심사, PT 발표(5분 이내)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연번	평가지표	배점비중
	계	100%
1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30%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30%
3	사업 수행 능력	20%
4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 특화성	20%

- 2차 심사 :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2017.2.27.]
- 결과 발표 : 2017. 3월 서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5. 기 타 사 항

- 서대문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대문구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문 의 처

-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 ☎ 02) 330-1330